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0,256,221	13,807,687
일반회계	417,676,837	12,530,305
특별회계	42,579,384	1,277,382
기타특별회계	42,579,384	1,277,382
상수도 특별회계	18,988,196	569,646
수질개선 특별회계	15,690,213	470,70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9,728	12,892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999,240	89,9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48,296	25,449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43,242	16,297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주차장 특별회계	3,080,469	92,414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5,064천원이며, 재해 · 재난목적 예비비는 4,348,04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